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2026년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화지원 사업 모집 공고(2차)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관리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2026년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화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특구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4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특구 사업자가 추진 중인 실증 과제(제품·서비스)의 상용화 및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
- ☐ 지원대상: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 * 주관 및 비영리기관(연구소 등) 제외
- ☐ 공고/접수기간: 2026. 8. 4.(화) ~ 8. 18.(화) 17:00까지
- ☐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통한 접수
-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1. 30.(월)
 - * 협약 체결 이전 계약 및 집행 건은 불인정(사업 기간 내 집행 원칙)
 - * 사업기간 내 중간점검, 최종보고, 성과물 제출 등 완료 필수

□ 지원규모 및 비율

-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50,000천원

※ 기업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는 지원규모 산정 시 제외(기업 별도 부담)

- (지원비율) 지원금 83% 이내 + 기업부담금(현금) 17% 이상

* [예시] 홍보물 제작 공급가액 12,000천원 ⇒ 지원금 9,960천원 + 부담금 2,040천원
(부가세 별도 / 비율 매칭 시 원 단위 금액은 반올림 처리)

※ 기업부담금 및 사업비는 법인 명의 계좌에서 지출(R&D 재정지원 사업비로 계상 불가)

※ 지원 한도 초과분 및 지원 불가 항목은 수혜기업 부담으로 집행

- (지원불가 항목) 내부 인건비, 임차료(월세 등), 간접비, 운영비 등 경상적 성격의 비용

□ 지원내용

- 실증 과제(제품·서비스)와 직접 연계된 활동에 한하여 인정

※ (중요) <별첨1>의 세부 지원 범위 및 정산·집행 기준을 확인하여 신청

- 기업별·프로그램별 지원 한도 내에서 프로그램 복수 신청 가능

* [프로그램 내] 리플렛 제작(3,000) + 홍보영상 제작(9,000) ⇒ 홍보물 제작(12,000)
[프로그램 간] 시험·분석(8,000) + 홍보물 제작(10,000) + 사업화 전략 수립(8,000)

구분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최대 지원한도 (천원)
기술 지원	시험·분석	▶ 시험·분석·평가 비용 지원	10,000
	현장애로 기술지도	▶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가 매칭 및 자문비 지원 ※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내 외부 전문가 등록 완료 후 과업 수행	5,000
사업화 지원	디자인 개발	▶ 브랜딩(네이밍·BI) 구축 및 제품·패키지·라벨 디자인 제작 지원	20,000
	홍보물 제작	▶ 온·오프라인 홍보물(리플렛,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지원	20,000
	사업화 전략 수립	▶ 시장조사 및 경영·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20,000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 국내/외 유관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20,000

* 기업별 최종 지원 금액 및 지원 항목 등은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결과 평가 및 회계 정산 결과 불인정 금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은 수혜기업이 전액 부담함

□ 추진체계 및 역할

[주관] 식품진흥원	특구사업자	서비스 공급기관(기업)
• 지원사업 계획 수립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모집 공고 및 선정·협약 • 중간 점검 및 최종 평가 •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등	• 서비스 공급기관 선택 • 지원사업 신청 및 수행 • 중간 점검 대응·자료 제출 • 최종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성과 증빙 및 만족도 조사 참여 등	• 서비스 제공(→수혜기업) - 과업 추진 현황 보고 - 최종 결과물 납품 - 정산 증빙자료 제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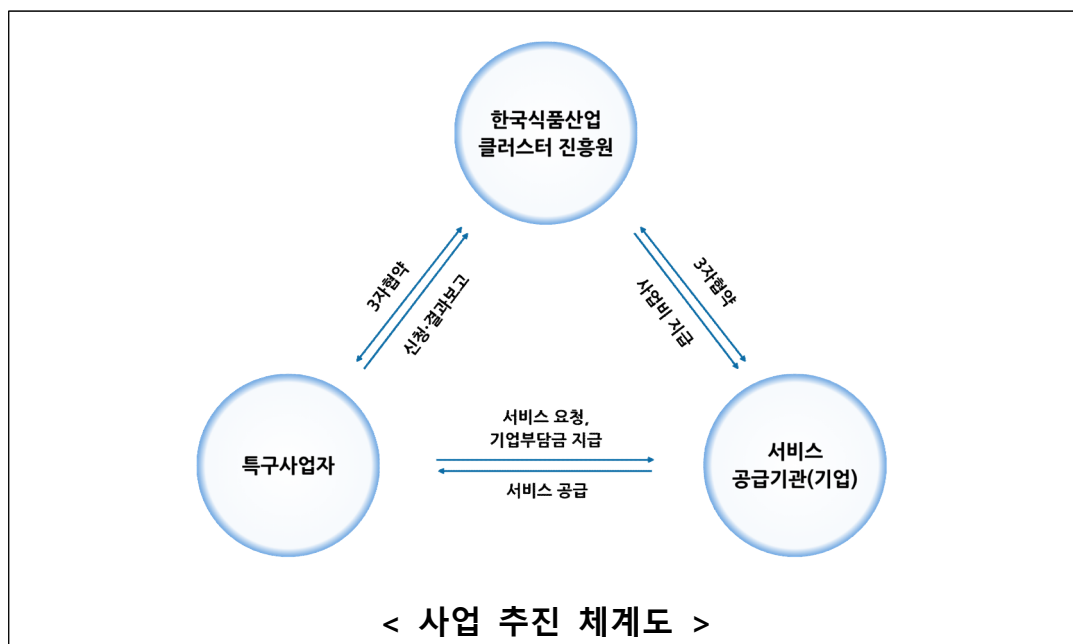
※ 특구사업자는 본 사업의 서비스 공급기관(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추진방식

- (협약체계) 3자 협약 체결(식품진흥원-특구사업자-서비스 공급기관)
- (운영형태) 특구사업자가 서비스 공급기관(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수행
 - ※ 서면 평가 시 서비스 공급기관의 과업 수행 적정성 별도 심사
- (사업비지급) 최종 평가 및 정산 결과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직접 지급

－ 현장애로기술지도,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프로그램에 한해 특구사업자 선 지출 후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사후 정산

*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등



구 분	내 용	일 정	비고
신청·접수	- 지원사업 공고 - 신청기업 제출 서류 접수(메일)	8. 4.(화) ~8. 18.(월)	특구사업자 → 식품진흥원
사전검토	자격요건 필수 제출 서류 구비 여부 검토	8. 19.(수) ~8. 20.(목)	식품진흥원
서면평가	제출 서류 등 종합 평가 (서면/내·외부 위원 5~7인)	8. 21.(금)	식품진흥원, 평가위원회
결과통보	평가 결과 안내(개별)	8. 28.(금)	식품진흥원 → 특구사업자
협약체결	평가 의견에 따른 사업비, 지원 항목 최종 확정 및 계획서 보완 후 협약 체결	9. 2.(수)~	식품진흥원, 특구사업자, 서비스공급기관
사업수행	계획서 및 협약 내용에 의거 사업 수행	협약체결일 ~11. 30.(월)	특구사업자, 서비스공급기관
중간점검	- 현장(대면) 모니터링 실시 - 사업 추진 현황 점검 - 사업 관련 애로사항 등 청취	9월 중	식품진흥원 ↔ 특구사업자
최종보고 및 평가	- 성과물 및 최종보고서 제출 (협약 종료일 기준 15일 전) - 사업 결과 최종 평가 (서면/내·외부 위원 5~7인)	11월 중	특구사업자 → 식품진흥원,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협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정산 결과에 따른 사업비 지급	11월 중	특구사업자 → 식품진흥원
사후관리	- 지원프로그램 운영 성과 조사 - 만족도 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	12월 중	식품진흥원, 특구사업자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자격: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 * 지역특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
- *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

□ 지원제외 대상

- 정부 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 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 받고 있는 기업(중복수혜금지)
- －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 부도,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 * 단,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프리 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제출서류에 의함
- 지원 선정 후에도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메일 제목) [규제자유특구 사업화지원] 기업명_신청서

※ 목록 순서대로 압축(ZIP)하여 제출(직인 및 서명이 포함된 서류는 PDF로 제출)

☐ 접수기간: 2026. 8. 4.(화) ~ 8. 18.(화), 17:00까지

※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및 수정 제출 불가

☐ 문 의 처

구분	연락처	접수처
규제자유특구 사업화지원 담당자	063-720-0641	ryu2616@foodpolis.kr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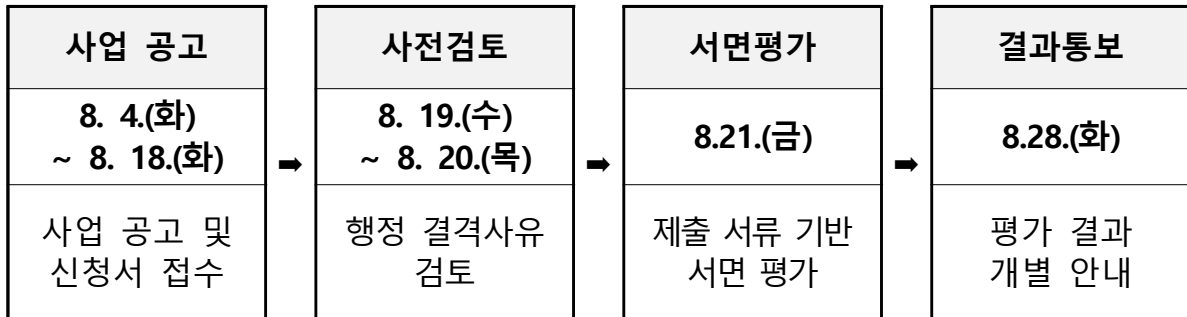
구분	서식명	비고
1	• 사업 신청서 및 세부추진 계획서	붙임1
2	•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붙임2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3
4	• 중복수혜 금지 약약서	붙임4
5	• 기업부담금 출자 약약서	붙임5
6	•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7	• 서비스 공급기관 제반 서류 - (필수)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실적 증빙서류 등 - (해당 시) 전문가 이력카드[붙임6] 및 증빙서류 등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 직인 날인 없는 신청서는 무효이며, 모든 제출 서류는 육안으로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함

※ 제출 서류는 반드시 본 공고의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함

(단, 사업자등록증 등 외부 발행 증빙서류 제외)

- 평가절차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1차) 사전검토

- 검토목적: 신청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필수서류 제출 여부 검토
- 검토방법: 식품진흥원 내부직원(2~3인)을 통한 제출 서류 검토

○ (2차) 서면평가

- 평가목적: 과제의 필요성, 수행의 구체성 및 적절성 등 평가
- 평가방법: 선정평가위원회(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7인 내외)를 통한 제출 서류 등 종합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및 수행내용(공급기관 포함) 조정 가능
 - 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 의견이 있을 경우, 특구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정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세부 사항은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단, 사업 기간 및 지원 한도 초과 불가)
 -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최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협약 불가)될 수 있음
- 선정기준: 평가위원별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 선정 * [붙임] 참고
- 결과발표: 신청기업 대상 개별 안내(공문 또는 메일 등)

□ 유의사항

- 지원사업 신청을 목적으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 보완 시 접수가 취소되거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혜기업은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 제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서면평가 과정에서 사업 목표 및 사업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로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별첨3] 참고
- 식품진흥원 「제재조치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① 협약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 ② 정산보고 등 불성실한 대응으로 진흥원으로부터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③ 지원사업 수행내용이 불량하여 최종평가 결과가 '불량'으로 나온 경우
- ④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인정 금액 등의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 ⑥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⑦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⑧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⑨ 그 밖에 지원사업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 선정 취소와 동시에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

- ① 주요사항 전후 불일치, 주요 내용 누락, 요구자료 미제출 등
- ② 제출 서류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③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
- ④ 수혜기업이 보조금법 등 사업 관련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 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한 것이 적발된 경우
-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관련법령 및 규정

- (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관리규정)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 사업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 (기타) 기타 보조금·사업 관련 부속 규정 일체

[붙임 1] 사업 신청서 및 세부추진 계획서

[붙임 2]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4] 중복수혜 금지 협약서

[붙임 5] 기업부담금 출자 협약서

[붙임 6] 전문가 이력카드 양식

[붙임 7] 선정평가서 양식

붙임[신청 서류 일체]

신청서류 작성 안내 가이드

프로그램 신청 안내

1. 지원범위

- 지원내용은 실증특례 제품·서비스와 직접 연계된 활동에 한하여 인정
- ※ (중요) <별첨1>의 세부 지원 범위 및 집행 기준을 확인하여 기준에 맞게 신청

2. 접수 및 문의 안내

- 신청기간: 2026. 8. 4.(화) ~ 8. 18.(화) 17:00까지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ryu2616@foodpolis.kr)
- 관련문의: 규제자유특구 사업화지원 담당자(063-720-0641)
- ※ (메일 제목) [규제자유특구 사업화지원] 기업명_신청서
- ※ 목록 순서대로 압축(ZIP)하여 제출(직인 및 서명이 포함된 서류는 PDF로 제출)

제출서류 작성사항 안내

1. 공통 작성 안내

- 제출 시,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 후 제출
-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으로 작성
-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표의 칸을 추가하거나 늘려서 작성(필요시 도표 및 도식화 등 활용)

2. 세부추진 계획서 작성 요령

① 사업화지원 사업 신청서

- (매출액)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기준, (종사자수) 4대보험가입자 기준으로 작성

② 세부추진계획서-전반

- 별도 작성 방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개조식으로 작성
- 정량 성과 목표는 명확한 수치로 기재 (ex. 시험성적서 1건)

③ 세부추진계획서-소요비용

- (애로기술지도) “시간당 단가 x 자문 시간 x 총 횟수” 기준에 맞추어 기재
- (박람회참가) 지원 항목별 예상 소요 비용을 구분하여 기재
(ex. 참가비 00천원/ 비품임차비 00천원 등)

④ 서비스 공급기관(기업) 제출 서류

- (시험분석/디자인/홍보물/사업화전략) 공급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등
- (애로기술지도) 자체 매칭 전문가 활용 시, [붙임6] 전문가 이력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박람회참가) 참가 예정인 박람회 공식 안내문(소개 자료)

※ 제출 견적서는 공급가액(지원금+기업부담금) 및 부가세(10%)가 명시된 견적서로 제출

※ 공급기관(업체)이 여러 개일 경우, 프로그램별 총액 기준이 아닌 ‘각 견적서별 공급가액’ 기준으로 자부담 등 매칭 비율 각각 적용

<붙임 1> 사업 신청서(※제출 시, 파란색 문구는 삭제 후 제출)

[illegible]

<붙임 1> 세부추진 계획서(※제출 시, 파란색 문구는 삭제 후 제출)

[참여기업명 000] 사업화지원 사업 계획서

참여기업 정보	기업명		대표자명	
	책임자/직급(직위)		연락처	

요 약 문

*1장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사업명	2026년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화지원 사업			
과제명				
총사업비 (단위:천원)	구분	총사업비	보조금	기업부담금
	금액		83%이내	17%이상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1. 30. (※수정 불가)			
과제목표	1. 본 지원사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 목표를 작성 2. 3.			
필요성	1. 2. 3.			
수행내용	1. 2. 3.			
기대효과	1. 2. 3.			
성과목표	1. 2. 3.			

세 부 추 진 계 획 서

1. 기업 현황

- ① 기업 추진 사업 및 현황 ※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현황을 간략하게 서술
- ‘(주)00000’는 건강기능식품 중 멀티비타민·다이어트 등 제품을 제조 및 생산을 주력으로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현재, 신규 공장을 완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 ② 지원 필요성 및 문제점 등(기업애로사항) ※ 문제점을 상세하게 서술
- 실증 특례 과제 수행과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문제점·전망, 현재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본 지원사업이 필요한 사유 서술

· 상세 서술 ※ 전문적인 부분 상세 서술 요망

-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서술 요망
(사진 등 여러 가지 자료 첨부 가능)

○ (애로사항 1)

-
-
-

○ (애로사항 2)

-
-
-

○ (애로사항 3) (사진 등 여러 가지 자료 첨부 가능)

2. 추진 계획

① 과제 목표

프로그램명	세부 내용	도출 결과
시험분석	유해물질 검출시험	공인시험성적서 1건
애로기술지도	품질관리 향상 위한 애로기술지도	전문가 자문일지 3건

② 수행 업무

구 분	역할
신청기업명	- 세부 수행 역할 기재
공급기관(기업)명①	-
공급기관(기업)명②	-

※ 공급기관(기업)이 다수인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③ 추진 일정

구분	세부 수행 내용	추진일정(월)				
		6	7	8	9	10
신청기업명						
[공급기관(기업)명①] 홍보 리플렛 제작						
[공급기관(기업)명②] 홍보 영상 제작						

※ 세부 과업이 다수인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3. 과제 수행계획 ※ 신청 프로그램별 작성

※ 신청 프로그램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미신청 프로그램 관련 양식은 삭제 후 제출
※ 선행 연구 결과, 보유 자원 활용 계획, 세부 과업별 업무분장, 단계별 수행 방법
(상세히 작성), 예상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등 작성

1. 시험·분석

1)

○

-

2. 현장애로기술지도

3. 디자인 제작

4. 홍보물 제작

5. 사업화 전략 수립

6.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4. 과제 성과 활용

※ 신청 프로그램별 성과 활용 방안 및 확산 계획(제품 출시 계획 등) 등

ex)

1. 홍보물 제작

○ B2B 리플렛: 기업 미팅 시 ~

5. 소요 비용

① 사업비 총액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보조금	기업 부담금(현금)
	83%이내	17%이상

※ 비율 매칭 시 원 단위 금액은 반올림 처리

② 프로그램별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산출내역	금 액
ex) 홍보물 제작	- 홍보 리플렛 제작: 3,000 x 1건 = 3,000(자부담 510) - 홍보영상 제작: 9,000 x 1건 = 9,000(자부담 1,530)	12,000
	견적서 공급가액 기준(부가세 제외) 작성	
총 사업비(보조금: / 기업부담금:)		

※ 공급기관(업체)이 여러 개일 경우, 프로그램별 총액이 아닌 '각 견적서별 공급가액' 기준으로 자부담 등 매칭 비율 각각 적용

※ 지원규모 및 프로그램별 지원 한도 내에서 예산집행 계획 수립

6. 서비스 공급기관(기업) 개요 ※ 공급기관(기업)별 작성

① 공급기관(기업) 정보

기관(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형태	☐ 법인 ☐ 개인	설립일	
주생산품		업태/업종	
주 소			
주요실적	※ 관련 분야 주요 수행 및 지원 실적 등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서 등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고,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원본과 동일하며, 그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서류는 원본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며, 변조, 위조 또는 기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제출된 서류의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있거나 원본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직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지원사업의 신청 및 접수, 협약체결, 과제 수행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제공 항목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수집·이용목적	신청 및 접수, 협약체결, 과제 수행관리, 성과 및 만족도 조사
보유·이용기간	5년, 미선정 기업은 심사 후 즉시 파기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선정 및 수행 등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소속	성명	직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여부	개인정보 이용동의 (자필서명)
			동의 ☐ 미동의 ☐	(인)
			동의 ☐ 미동의 ☐	(인)
			동의 ☐ 미동의 ☐	(인)
			동의 ☐ 미동의 ☐	(인)
			동의 ☐ 미동의 ☐	(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중복수혜 금지 협약서

당사는 2026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원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귀 기관의 지원대상 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수용함은 물론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직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기업부담금(현금) 출자 협약서

사 업 명	2026년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화지원 사업
과 제 명	
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1. 30.

□ 수행기관 출자내역

(단위: 천원)

보조금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

당사는 「2026년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화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기업부담금(현금)을 위와 같이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직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현장애로기술지도 전문가 이력카드

기본 사항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소속기관(직위)				
	소속기관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유선전화
e-mail					
학력 사항	기간	학교명		전공	학위
					박사
					석사
					학사
자격 사항	자격증(면허)명		자격증(면허)번호		발급기간
경력 사항	기간	소속기관		직위	업무내용(구체적)
전문 분야	* 경력사항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작성 시 삭제) ※ 사업 신청 시, 본 이력카드에 작성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함께 제출 必 ※ 선정 평가 결과 통보 후,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에 접속하여 '외부 전문가 신청 및 위촉' 절차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 수집 및 활용 목적: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 운영 및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이하 '플랫폼')' 내 전문가 등록 -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정보, 연락처, 학력·자격증·경력 사항, 전문 분야 - 보유 및 이용기간: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 종료 시까지 (단, 플랫폼에 등록된 전문가 정보의 경우 진흥원에 해촉 신청 시 파기)				
	- 제공 목적: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 운영 및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내 전문가 등록 - 제공 항목: 전문가 정보 일체 - 제공대상: 본 사업 평가위원, 사업 관련 유관기관, 플랫폼 및 푸드e음 이용자 - 보유 및 이용기간: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 종료 시까지 (단, 플랫폼에 등록된 전문가 정보의 경우 진흥원에 해촉 신청 시 파기)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사업 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 안 함 ☐				
상기 기재사항과 첨부하는 자료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규제자유특구 사업화지원 사업 선정평가서

기업명		과제명	
-----	--	-----	--

1. 종합평가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과제개요 (30) 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 과제 목표 및 필요성 · 과제의 필요성과 시의성 · 목표 설정의 명확성 · 구체성 · 정량성	10	
	- 과제 범위의 타당성 · 과제 범위 설정과 총괄 목표의 부합성 · 과제의 핵심과 추진내용 간의 연결성	10	
	- 과제 목표의 실현가능성 · 선행연구결과 등 제시된 방법의 구체성 · 과제목표의 달성 가능정도	10	
과제수행 (40) 과제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	- 과제 수행계획의 합리성 · 단계별 기술지원계획의 합리성	15	
	- 과제 내 역할 및 구성의 적절성 · 특구사업자와 서비스 공급기관 역할 및 구성의 연계성	15	
	- 사업비 규모 · 과제기간 및 과제수행 방법의 적절성 · 사업비, 과제기간, 과제 수행방법의 적절성	10	
과제활용 (30)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 과제 성과 활용 계획의 구체성 · 성과 활용 방안 및 확산 계획의 구체성	15	
	- 과제 성과의 산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 과제 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 산업화 가능성 · 기술지원 결과의 경제 · 사회 · 지역적 파급효과	15	

합 계(총 100점)	점
-------------	---

지원규모 적정성	적정 보조금(천원)	적정 지원기간(개월)

2. 과제선정 필요시 보완사항 등 의견

3. 과제선정 제외 시 구체적인 사유 등 의견

- 과제의 유사·중복성 등

평가위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